

#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1906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8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 : 2024년 5월 27일

다. 회부일 : 2024년 5월 30일

라. 상정일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
2024년 6월 2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이동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례로 「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-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~1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없음.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 : 개선의견 있음(반영).

※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,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음.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갈등사항 없음.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 : 조건부 적정

※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, 위원 구성(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규정)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 추가를 요청하여 반영하였음.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4. 12. ~ 5. 2.) 결과: 의견없음.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### 가.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

- 본 제정조례안(이하 ‘본 제정안’)은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을 국제 협력계정과 분리하여 지역교류협력기금으로 별도의 근거 조례를 마련 하려는 것임.
- 본 제정안은 목적, 정의, 기금의 설치, 기금의 존속기한, 기금의 재원 등 기금 관련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 <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>

조문 체계	주요 내용
제1조(목적)	-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제2조(정의)	- “다른 지방자치단체”에 대하여 정의함.
제3조(기금의 설치)	-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.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	-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. 단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가능.
제5조(기금의 재원)	-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기금 운용 수익금,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함.
제6조(기금의 용도)	-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경비, 재해 복구경비 등
제7조(기금관리)	- 기금관리공무원(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)에 대하여 규정함.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	- 위원회 심의사항(기금운용계획, 사업 및 지출규모, 결산 등)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.
제9조(위원회의 구성)	- 위원회 구성인원, 위원장 선출, 위원 임명 및 위촉,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함.
제10조(위원회의 해촉, 제척 · 기피 · 회피)	- 위원 해촉, 제척 등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름.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	- 회의소집 방법,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함.
제12조(수당)	-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함.

-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10월 조례 개정(국내협력계정 신설 및 2008년도 기금 조성)으로 신설되었으며,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임. 동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(구성인원 9명) 심의를 통해 관리·운용되고 있음.

#### □ 기금 개요

- 목 적 :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
-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설치일자 : '07.10월 조례 개정(국내협력계정 신설), '08년도 기금 조성
- 존속기한 : 2028.12.31.(존속기한 연장 조례 개정안 시의회 가결, '23. 9. 15.)
- 기금운용 : ‘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심의를 통한 기금관리·운용

━ <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심의위원회 > ━

- ◆ 구성인원 : 9명
  - 위촉직(8명) : 민간전문가 6, 시의원 2
  - 임명직(1명) : 행정국장
- ◆ 임 기 : 2년(1회에 한해 연임 가능)

- 대외협력기금은 하나의 조례로 두 계정(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)을 규율하고 있어, 본 제정안은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각각의 계정별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기금의 운용(市) 및 심의(의회)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고,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※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“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”이 2024. 5. 30.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됨.

- 또한, 각 기금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본 제정안을 통해 운용하는 지역교류협력기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현행 제한적·한정적 사업추진에서 다양하고 내실있는 기금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활용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·중복적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·폐지를 권하고 있고,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정비대상으로,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바, 본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이 분리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만큼 활동적이며,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했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## 나. 세부내용 검토

### 1) 목 적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을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#### 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 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대외협력기금</u> 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<u>지역교류협력기금</u> 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※ 본 제정안은 기금 명칭을 “지역교류협력기금”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명칭도 “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하려는 것임.

## 2)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의 적용대상인 ‘다른 지방자치단체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규정 해석 및 집행 시 혼선 및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### 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<p><u>제2조(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의 범위)</u> ① 이 조례에서 ‘<u>국내 타지방자치단체</u>’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)를 말한다.</p> <p>② 이 조례에서 ‘<u>외국 지방정부</u>’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‘다른 지방자치단체’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를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.</p>

## 3)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(안 제3조~제4조)

-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·공급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,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.

제3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며,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, 조례와 함께 기금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,
- 일반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,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며, 존속 목적을 상실하거나, 불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축소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정한 것으로 사료됨.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  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※ 존속기한 관련 내용은 2023년 9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후 본 회의 원안 가결됨.

#### 4) 기금의 재원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기금 조성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, 기금 운용수익, 기부 금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,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<p><b>제5조(기금의 재원)</b>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li> </ol>	<p><b>제5조(기금의 재원)</b>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li> </ol>

2.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	2.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	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4. 그 밖의 수입금	4. 그 밖의 수입금

- 다만, 올해 본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(13억원) 및 예치금(14억 2천 3백만원)이 대부분(96.9%)을 차지하고 있는바, 기부금품 등 기타수입 확대 등 수입의 다각화를 위한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### [ 2024년 기금운용계획 ]

(2024. 5월말 기준)

<수입계획>		<지출계획>							
구 분	2023	2024	증감	비 고	구 分	2023	2024	증감	비 고
계	4,606	2,811	△1,795		계	4,606	2,811	△1,795	
<b>전 입 금</b>	<b>1,000</b>	<b>1,300</b>	300	일반회계 출연금	<b>비 용 자 성 사 업 비</b>	<b>3,181</b>	<b>2,058</b>	△1,123	
이 자 수 입	60	80	20	예금상품 이자수입	<b>기 본 경 비</b>	<b>3</b>	<b>3</b>	-	위원회 운영비
기 타 수 입	6	8	2	기금사업 집행잔액	<b>예 치 금</b>	<b>1,422</b>	<b>750</b>	△672	정기·공금 예금 예치
<b>예치금회수</b>	<b>3,540</b>	<b>1,423</b>	△2,117	2023년도 이월금					

### 5) 기금의 용도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, 재해복구 및 구호경비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용도별 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방만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,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① <u>국내 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</u></li> <li>2. <u>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</u></li> <li>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</li> </ol> <p>② <u>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</u></li> <li>2. <u>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</u></li> <li>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</li> </ol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<u>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</u></li> <li>2. <u>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</u></li> <li>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</li> </ol>

- 다만, 올해 사업추진 현황(5월말 기준)을 보면, 5개 사업의 집행률은 24.5%로 (재해재난 구호지원 제외시 38.2%) 저조한 편이고, 특히 ‘랜선 나눔 캠퍼스’ 사업은 집행률이 2.1%에 불과한바, 사업지연 요소의 분석 및 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아울러, 편성액 중 타 지자체 재난구호가 거의 절반(10억원, 48.6%)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,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.

[ 2024년 사업추진현황 ]

(‘24.5.31. 기준, 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편성액	집행액	집행률	추진실적
합계	2,058	504	24.5%	
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(청소년정책과)	300	210	70.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울-지역 청소년 역사·문화체험 교류</li> <li>- '24년 참여 지자체(13) : 경북, 전남, 거창, 고성, 울진, 의성, 구례, 영암, 고창, 진안, 정읍, 제천, 아산</li> <li>- 서울-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계획 수립(1월)</li> <li>-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(2~3월)</li> <li>- 사업 실행계획 승인 및 1차 보조금 교부(4~5월)</li> <li>-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추진(6~12월) : 약 770명 상호교류 예정</li> </ul>
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(대외협력과)	1,000	100	10.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타 시·도 재해·재난 구호지원 상시 모니터링 및 검토(예비비 성격)</li> <li>- (2024.1.)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 100백만원</li> </ul> <p>※ 2023년 추진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2023.7.) 중·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지 구호금 지원 600백만원</li> <li>▶ (2023.8.)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내 이동식 화장실 지원 50동</li> </ul>
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(관광정책과)	250	175	70.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한 MICE 공동마케팅 운영</li> <li>- PLUS CITIES 지원금 지원 : 총 30건, 1,662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강원도 21건, 경기도 4건, 인천시 2건, 전라북도 3건</li> </ul> </li> <li>- 서울시-충청남도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력 신규 협약체결 (3.22.)</li> <li>▶ 협약 체결 도시 : 강원, 광주, 경기, 충북, 전북, 경남, 인천, 대전, 충남</li> <li>- 2024 PLUS CITIES 통합 리플랫 제작</li> <li>▶ PLUS CITIES 지원제도 홍보 및 지자체 10개 제도 소개(국·영문 각 300부)</li> <li>- 2024 KOREA MICE EXPO 참가 설명회, 국내외 행사 연계 설명회, 국내외 광고시행 논의(4.20.)</li> </ul>
랜선 나눔 캠퍼스 (대외협력과)	473	10	2.1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울-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랜선나눔캠퍼스 추진</li> <li>- 방침 수립 및 서울시-KT 간 업무협의 : '24. 1. ~ 2.</li> <li>- 사업 참여자 모집 및 홍보활동 : '24. 3. ~ 4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BS 중학 온라인 배너 활용 홍보 : 조회 8,965회, 지원 112명</li> <li>▶ 보도자료 배포 : 한겨레신문, 연합뉴스, 이데일리 등 보도</li> </ul> </li> <li>- 멘토 및 멘티 참여자 모집 및 선발 : '24. 4. ~ 5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서울 대학생 160명(예비 33명 별도), 지방 중학생 480명(예비 358명 별도) 선발</li> </ul> </li> <li>- 대학생 멘토 사전교육 및 멘토링 활동(6개월 간) : '24. 5. ~</li> </ul>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(대외협력과)	35	9	25.7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한부모가족 대상 농촌 힐링체험 프로그램 운영</li> <li>- (상반기) 부여(5.24~25): 7가정 20명, 영월(6.1~2) : 8가정 21명 상주(6.22~23), 괴산(6.29~30) 추진 예정(모집종)</li> <li>- (하반기) 부여, 영월, 상주, 괴산 4회 총 80명 참여 예정</li> </ul>

## 6) 기금관리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기금관리공무원(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 등)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, 전문성·책임성 강화 및 기금관리 체계화를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, 집행의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<p>제7조(기금관리)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기금운용관</u></p> <p>가. 국내협력계정 : 행정국장</p> <p>나. 국제협력계정 : 경제정책실장</p> <p><u>2. 분임기금운용관</u></p> <p>가. 국내협력계정 : 대외협력과장</p> <p>나. 국제협력계정 : 국제협력과장</p> <p><u>3.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	<p>제7조(기금관리)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 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기금운용관: 행정국장</u></p> <p><u>2. 분임기금운용관: 대외협력과장</u></p> <p><u>3. 기금출납원: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</u></p>

## 7)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~제12조)

- 안 제8조는 기금의 관리·운용 관련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'기금운용심의위원회'의 설치 근거 및 구체적인 심의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, <u>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,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</u>(이하 "계정별 위원회"라 한다)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</li><li>2.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</li><li>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</li><li>4. 삭제&lt;2020. 7. 16.&gt;</li><li>5.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</ol>	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</li><li>2.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</li><li>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</li><li>4.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</ol>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는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,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렴, 감독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최근 3년간 11회 (서면회의 포함)의 회의를 개최하였음.

## [ 최근 3년간(2022~2024.5월)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]

연도	차수	일시	안 건	심의결과
2024	1차(서면)	2.20.~23.	'23년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결산	원안가결
	2차(서면)	5.9.~10.	'24년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	〃
2023	1차(대면)	2.16.	'22년도 기금결산 및 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	원안가결
	2차(서면)	3.27.~31.	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	〃
	3차(대면)	5.22.	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존속기한 연장 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	수정가결
	4차(서면)	7.7.~17.	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	원안가결
	5차(대면)	10.12.	'24년도 대외협력기금(국내협력계정) 운용 계획	〃
2022	1차(서면)	2.15.~16.	'21년도 기금결산 및 '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	원안가결
	2차(서면)	6.27~29.	'21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	〃
	3차(서면)	10.13.~11.4.	'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'23년 기금운용계획	〃
	4차(서면)	11.22.~25.	'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	〃

-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, 위원장 선출, 위원 임명·위촉 관련 사항,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,
  - 서울시 조직담당관 요청사항(위원 구성에서 당연직, 위촉직 구분 및 위원장 역할)과 양성평등담당관 의견(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)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  - 다만, 국내·국외 계정의 분리로 심의대상은 줄고, 위원회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,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〈 현행 대외협력기금 설치·운용 조례 대비 조문내용 비교 〉

현행 조례	제정안
<p>제9조(계정별 위원회의 구성)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촉직 위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성별을 고려하여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</p>

<p>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<u>1. 소관국장 및 안건 관련 실·국·본부장</u></p> <p><u>2. 지방자치,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·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</u></p> <p><u>3. 지방자치,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 <p>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p> <p>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</p> <p>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.</p>	<p>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<u>1. 당연직 위원: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</u></p> <p><u>2. 위촉직 위원</u></p> <p>가. <u>지방자치,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</u></p> <p>나. <u>지방자치,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다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</p> <p>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⑤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.</p>
--	---

-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를 규정하고, 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개의·의결 정족수 등을 정하며, 안 제12조는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행정기관에서 심의 및 의결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안정성을 위한 근거(안 제8조)와 함께 투명성·공정성(안 제10조), 중립성·합법성(안 제11조)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(법령 또는 조례상 근거)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 본 제정안에서는 필수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 입법기술적으로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제10조(위원회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 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.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(재석위원 8명, 전원 찬성).

**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**

**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**

#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906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의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례로 「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기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5~6조)
- 마.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
(안 제8~1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  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    - ※ 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,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여 반영하였음.
  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  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조건부 적정
    - ※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, 위원 구성(당연직과 위촉직 구분 규정)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 추가를 요청하여 반영하였음.
  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### 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4. 12. ~ 5. 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행정국 대외협력과 김근형 (☎ 2133-6658 )

##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, 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‘다른 지방자치단체’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를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는 제외한다.

제3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
#### 4. 그 밖의 수입금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
2.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
3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

제7조(기금관리)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 행위(계약 사무 포함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행정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대외협력과장
3. 기금출납원: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
4.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

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

2. 위촉직 위원

가. 지방자치,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

나. 지방자치, 지역 간 상생 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다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의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2 및 제9조에 따른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기존 대외협력기금 국내 및 국제협력 계정의 분리와 국내협력계정 기금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,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4. 작성자

- 대외협력과 주무관 김근형(02-2133-6658)